

##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국도화학 주식회사(이하 "당사")는 상법 제 527조의 3에 따라 2024년 8월 16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국도첨단소재 주식회사(이하 "국도첨단소재")와의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
본 합병은 당사가 국도첨단소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국도첨단소재의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, 국도첨단소재는 소멸합니다.

합병기일은 2024년 10월 1일 예정이며, 합병 비율은 국도화학(주) : 국도첨단소재(주) = 1 : 0 입니다.

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### 1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제출대상 채권자 : 공고일 현재 "당사" 또는 "국도첨단소재"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

나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4년 8월 19일 ~ 2024년 9월 20일

다.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

1)"당사" 채권자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1(가산동) 재경그룹(☎ 02-3282-1476)

2)"국도첨단소재" 채권자 :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3길 117 기획관리그룹(☎ 031-358-7140)

2024년 8월 19일

국도화학 주식회사  
대표이사 이시창